

# 방문취업(H-2) 동포 취업 가능여부 조회 서비스 개선 알림

'21. 12. 6.(월) 법무부 체류관리과

1. 코로나19로 출국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'20. 12월부터 체류기간이 만료된 방문취업(H-2) 동포가 가족동거 등 취업 외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, 한시적으로 「취업 외 목적\*」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

## \* 「취업 외 목적」방문취업(H-2) 자격이란?

-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(H-2)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해야 하는 동포에게 코로나19 등 출국의 어려움을 고려하여, 국내에서 취업하지 않으면서 가족방문 동거, 자녀양육, 학업 등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할 경우 '취업 외 목적'으로 1회 1년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 부여

※ 단, '취업 외 목적'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후 취업활동을 하여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및 체류기간 연장 불허, 출국 후 6개월 간 방문취업(H-2) 비자 발급이 제한될 수 있음

2. 이와 관련, 방문취업(H-2)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 가능 자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하이코리아 「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」를 개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## ○ 처리 절차

- ① 하이코리아 접속 → ② 정보조회 → ③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여부 조회 메뉴 선택 → ④ 인적사항 입력 후 '조회' 선택

## ○ 조회 결과

- (취업가능 H-2) "취업 가능" 문구 표출
- (취업불가 H-2) "취업 불가" 문구 표출

## 붙임

## 방문취업(H-2) 취업 가능 자격여부 확인 방법

### □ 취업 가능한 방문취업(H-2) 자격인 경우

####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확인서비스

#####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확인 결과

성명	T [REDACTED]
등록번호	70 [REDACTED]
체류자격	H2
합법 체류 여부	합법 체류자입니다. <b>취업 가능</b>

※등록/거소신고 번호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법무부 자료와 비교한 결과입니다.

##### 취업가능분야 및 고용절차

◆ 해당외국인의 취업활동이 가능한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취업가능 업종(46개업종 - 첨부파일 참조)

◆ 해당외국인을 고용하고자할 경우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고용절차 및 필요사항 : 내국인 구인노역 및 특례고용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× 특히, 건설업에 취업하려는 자는 「건설업 취업 인정증」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고용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.

- 해당업종에 취업한 외국인은 취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맞춰야 합니다.

× 해당외국인의 고용가능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추가로 원하실 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(국번없이 1345)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□ 취업 불가능한 방문취업(H-2) 자격인 경우

####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확인서비스

##### 외국인 취업 및 고용가능 여부 확인 결과

성명	T [REDACTED]
등록번호	70 [REDACTED]
체류자격	H2
합법 체류 여부	합법 체류자입니다. <b>취업 불가</b>

※등록/거소신고 번호와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법무부 자료와 비교한 결과입니다.

##### 취업 불가에 대한 안내

◆ 해당 외국인은 '취업 외 목적'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,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.

☞ 「취업 외 목적」 방문취업(H-2) 자격이란?

- 취업가능 업종방문취업(H-2)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동포에게 코로나19 등 출국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서 취업하지 않으면서 가족방문 및 동거, 자녀양육, 학업 등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할 경우 '취업 외 목적'으로 1회 1년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

× 대상자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시 취업 불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, 체류기간연장 보허, 출국 후 6개월 간 방문취업(H-2) 비자 제한 등을 고지 받음(첨부파일 참조)